

도. 권. 조.		
등록일	분류기호	
	A 4 장애인	46

장애인고용확대를 위한 자매결연식

1996. 4. 16 13:00
태화빌딩 대회의실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매결연식

- 일시 : 1996. 4. 16 13:00 - 15:00
- 장소 : 태화빌딩 지하 대회의실 (종로2가 YMCA 뒷편)

- 명칭 :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민주노총·장대협 자매결연식'

- 참석

민주노총 : 민주노총 임원진, 자매결연 참여 노조대표
KBS노조, 현대자동차노조, 대우조선노조, 사무노련
장애인복지공대협: 참가단체 대표

- 프로그램

1. 인사말 (양측 대표)
장애인 복지와 고용확대를 위한 연대활동을 시작하며
: 장애인 단체, 민주노총
2. 취지, 경과 보고
3. 자매결연식
: 자매결연패 교환
: 자매결연노조에 대한 기념패 증정/양측 인사말/사진촬영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발표
- 질의 응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공동 기자회견문

정부는 1천억원에 이르는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을
공공자금 등으로 예탁하지 말고 장애인 고용확대사업에 전액 투자해라!

장애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동정이나 일과성 위로행사가 아니라 땀흘리며 일할 수 있는 일터입니다.

장애인은 이른바 '일반인'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해동안 교통사고(94년 43,000명)와 산업재해(94년 29,854명) 등으로 수만명의 장애인이 생겨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속에서 오늘의 '일반인들'은 언제라도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장애인수는 4백만명을 넘으며 이 가운데 95%이상이 산업재해, 교통사고, 환경공해 등으로 인한 중도장애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인간불량품이 결코 아닙니다. 사회 복지제도가 발달된 외국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종류 및 등급에 따라 적절한 교육만 이루어진다면 장애인의 일거리는 무궁무진합니다. 장애인 또한 고용기회가 주어질 때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꾸려나가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소외감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전세계적으로 11위에 달하고 현 정부 또한 '삶의 질 향상'을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속에서 대다수 장애인들은 사회적 무관심은 물론 직업재활시설의 절대적인 부족, 정부를 포함한 사용자측의 고용기피,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일터와 직업을 찾지 못하고 소외와 빈곤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95년 현재 15세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약 34%에 불과하며 직종별 취업분포 또한 농림어업, 일용직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로 볼 때 3.3%가 생활보호대상자인데 반해 장애인중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려 12.1%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볼 때 91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3백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백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장애인 고용율은 94년말 현재 0.43%에 불과하며 법을 집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조차 0.83%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부를 독점하고 있는 30대 재벌에 있어 장애인 고용율은 고작 0.24%로서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1차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부담금 액수가 매우 미약하는 점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1인기준 월 15만 9천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바, 이 부담금 총액이 92년 220억원에서 94년 550억원으로 늘어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사용자들은 장애인 고용대신에 미약한 부담금 납부로 때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노력이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재정지출과 관련하여 정부는 94년 한해동안 민간기업으로부터 550억원의 부담금을 징수하였으면서도 정부 스스로 장애인 고용 촉진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고작 4억 6천만원에 불과하여(민간 부담금의 0.84%) 그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민간기업으로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으로 징수한 돈의 대다수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거하여 공공자금으로 예탁하거나 금융기관에 예탁해 놓고서 장애종류나 등급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 장애인 고용에 따른 기업부담에 대한 보상 등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92년부터 94년까지 1,198억원의 부담금을 징수하여 기금을 운용, 그 총액이 94년 말 현재 1,076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 가운데 공공자금으로 4백억원, 금융기관에 598억원 등 약 1천억원이 장애인고용 확대사업에 투자되지 않고 예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에게 묻건대, 정부가 주창하는 '삶의 질 향상'이 무엇이길래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출연금을 대폭 높이지는 못할 망정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에 대한 부담금으로 징수한 돈조차 장애인 고용 확대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공공자금 등으로 전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애인 고용을 명분삼아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것입니까?

따라서 오늘 소박한 자매결연식을 통해 노동조합과 장애인단체가 힘을 합쳐 장애인 고용 확대에 나서기로 합의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는 장애인들이 땀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확보하여 극심한 빈곤과 소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1천억원에 이르는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을 정부 마음대로 공공자금 등으로 예탁하지 말고 장애인 고용확대사업에 적절히 투자되어야 하며, 아울러 기업들의 의무고용 회피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1천억원에 이르는 기금으로 장애인들이 장애등급 및 종류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기업이 장애인 고용시 발생할 수 있는 생산성 저하와 추가비용부담 등에 대한 보상조치를 확대하기만 하더라도 장애인 고용은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 한 현행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핵심내용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 제도는 그 액수가 일정정도 오른다고 할지라도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고용확대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과 장애인단체를 대표하고 있는 우리는 민주노총 소속사업장에서의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장애인 2% 의무고용이 실시되도록 노력하는 것과 별도로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각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

1996년 4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권영길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의장 조일묵

<참고> 소속단체 현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산업별 조직(18개)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민주화학노동조합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전국사무노동조합연맹
전국출판노동조합협의회,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
전국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전국대학강사노조, 전국화물운송노동조합연맹

*** 그룹조직으로는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 기아그룹
노동조합총연합이 소속되어 있으며 소속 노조들이 광역 시도단위로 지역본부를 구성
하고 있음.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소속 단체(15개)

부림의 전화(대장 김정희), 삼육재활센터(이사장 민군식),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이성재),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회장 채종걸), 한국교통장애인협회(회장 임통일),
한국농아복지회(회장 김기창), 한국맹인복지연합회(회장 나종천), 한국장애인 문인협회
(회장 방귀희),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회장 김석원 윤홍로),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회장 양동춘 목사), 한국장애인 재활협회(회장 조일묵), 한국재활재단(이사장 문병기),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회장 박일상), 한국지체장애인협회(회장 장기철), 한국청각장애
인협회(회장 김완) 이상 가나다순

< 참고자료 1 >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민주노총 단체협약 요구안

제47조 【장애인 고용】 ① 회사는 전체 직원의 2%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2%에 못 미치는 경우 조합이 추천하는 자의 채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② 취업중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은 기준고용률 2%를 상회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치료후 정규직으로 재고용해야 하며, 계속근로로 간주하여야 한다.

<관련 법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공개채용인원의 100분의 2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4조)

○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5 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100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5조)

< 실천 방향 >

○ 현재 장애인복지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의무고용분담금만 내고 장애인고용을 회피하는 관행'을 바로잡아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를 기업의 사회적 책무로서 확실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것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노동조합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즉 기업들의 의무고용 회피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노사 쌍방간에 '의무고용비율 2%준수'를 명시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러한 단체협약 체결운동이 모든 사업체로 확산되면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 민주노총과 장애인단체가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단체협약조항을 모든 사업장에서 확대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러한 연대활동을 통해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장애인고용창출 방안을 마련하여 단체협약 등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 및 중대재해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대부분의 제조업 노동조합에서는 산재장애인의 재활 및 고용창출이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활동의 직접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현재 10만명이 넘는 산재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이와 함께 노동조합과 장애인단체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바로세우기 운동'을 비롯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장애인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공동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정부분담액의 확대, 사업주 의무분담금의 왜곡된 활용 개선 등을 위한 공동 노력도 필요할 것임. 95년 장애인 의무고용을 기피한 기업에 부과한 의무고용분담금은 609억원인데, 의무고용비율이상으로 고용한 업체에 대한 지원금은 2.1억원, 300인 미만 업체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장려금은 8억원에 불과했음. 특히 그중 400억여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해 재정경제원으로 넘어가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운영비로 지출되었음.

< 참고자료 2 > 각 정당별 장애인 복지관련 공약(민주노총 정책자료)

	신한국당	국민회의	민주당	자민련
- 장애인의무고용 확대 (의무고용비율 준수)	- 의무고용대상업체 단계적 확대 - 장애인 고용기업에 용자,장비지원 - 장애인 생산물품 판매관리업체 설립	- 의무고용 대상업체 범위 확대 - 직업훈련 강화, 직종개발 - 장애인고용기업 지원(세금감면, 금융지원 등) - 의무불이행시 고용부담금인상(최저임금100%로)	- 장애인의무고용비율준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무고용기준을 3%로 상향조정 - 의무고용분담금인상 - 적합직종개발, 직업훈련 실시	- 300인 이상사업체 의무고용비율 준수
- 장애인 복지확대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법(안) 제정 - 보장구 품질개선 투자 및 첨단산업 육성 - 선천성 장애발생 예방사업(대사이상 검진) - 장애자를 위한 국립특수전문대학 설립 -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프로그램 개발	-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 장애인 자립자금 확대지원 - 중증장애인 생계보조대상 전면확대 - 장애인자립자금 확대지원(3000만원까지) - 장애인 전문기능 대학설립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 생계보조수당 인상(97년부터 10만원으로) - 임산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무료실시 - 장애아동 특수교육 의무화(특수교육시설 및 교육인력 확충)	-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 중증장애인 철도요금 및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 보장구 무료지급 - 생활보조수당 연차적 인상(20만원까지) - 장애인특수학교 증설